

경운대학교 비교과과정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교과과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교과과정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위원장은 인재개발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커리어개발지원센터장, 취업지원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 인터내셔널센터장, 인덕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9인 내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비교과과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을 임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비교과과정의 총괄관리 및 개선
2. 비교과과정 편성계획
3. 비교과프로그램 타당성 검토
4. 비교과과정 성과보고서 분석결과 심의
5. K-MASTER 인증 및 마일리지 관련 비교과프로그램 검토
6. 기타 비교과과정 관련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인재개발처에서 관장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